

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[] 적용
[] 변경·추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신청인 (계좌보유자)	① 성명(단체명) ③ 전화번호	② 주민등록번호(고유번호)

1. 신청 금융회사 및 적용시기

금융회사명	과세기간(적용연도)
-------	------------

2. 신청 내용

구분	기본공제 적용 또는 변경·추가 신청금액
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(5,000만원 한도)	
기타 금융투자소득 (250만원 한도)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또는 변경·추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금융회사 등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나,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후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거나,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득금액은 5,000만원, 이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참고>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득금액

- 가.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
- 나.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
- 다.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
- 라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「상법」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